

재단법인 제주삼다수재단 2021년도 삼다수 장학생 모집·선발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재)제주삼다수재단에서 아래와 같이 2021년도 장학생 선발 일정을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재단법인 제주삼다수재단 이사장

1. 장학생 선발 개요

구 분	선발 인원	장학금액	지급 시기
대 학 생 (신입생 포함)	60명	5,500천원/인,년 · 1학기: 2,750천원 · 2학기: 2,750천원	2021년 1학기(3월중) 2학기(8월중)

※ 2021년 2학기 장학금의 경우, 2021년 1학기 본 재단 학업성적기준(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77점 이상)에 미달 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취소됨

2. 신청 요건

-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내에 1년 이상(연속)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 또는 제주도민의 자녀
- ②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대학원, 해외대학교 제외

③ 학업 요건 (신입생 및 재학생)

구 분		자격 요건
대학생	신입생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또는 고3 내신성적이 등급합산 평균 3등급 이상 - 과목: 국어·수학·영어·탐구(택 2과목)영역, 총 5 과목 ※ 이 중 해당(과목) 성적이 없는 경우 직전학년 해당(과목) 성적으로 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계절학기 제외) ·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기준 백분위 환산 점수 77점 이상 ※ 재학생 中 8학기 초과한 자(5학년 이상)의 경우 4학년 학생과 동일하게 봄 ※ 복학생·해외 교환학생 등은 휴학·교환 전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적용

④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학사징계 포함)이 없는 자

3. 선발 방법

- ① 접수자들의 학업성적 및 생활정도를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재)제주삼다수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

※ 선발 기준: 학업성적 (60점) + 생활정도 (40점)

- 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 중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 선발 (학기별)

※ 차순위자 선발기준: 각 학년별 타 장학금 수혜(등록금 전액)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인원만큼 각 학년별 차순위자 선발

* 각 학년별 차순위 후보자(대기자) 10명 선정 (종합점수 순위)

- ③ 접수 인원 중 심사 과정에서 동점자 발생 시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

4. 구비 서류 * 기타 추가확인이 필요할 시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음

① 재학 및 성적증명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대학생	신입생	㉠ 고3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또는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1부. ㉡ 대학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 1부. ※ '21학년도 대학능력시험 또는 고3 내신성적 중 더 좋은 성적 제출 요청
	재학생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직전학기 평점평균에 대한 백점환산 점수 표기) ※ 주의사항: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u>한 학년 및 전체 학년 평점평균에 대한 백점환산 점수를 직전학기 백점환산 점수로 혼동하는 것에 주의</u> → 성적증명서에 직전학기 평점평균에 대한 백점환산점수가 없을 경우 백점환산표 등의 증빙서류 첨부 ※ 복학·교환학생 등은 휴학·교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및 휴학 사실 증빙서류 제출

② 도민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 5 ~ 6 page 참조

구분	제출 서류
공 통	㉠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학생 본인 / 부 / 모 中 택 1)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학생 본인 / 부 / 모 中 택 1) ※ 이혼가정 또는 부/모 중 1인 부재(사망 등)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부/모 중 1인의 서류 제출

※ 기혼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서류 제출

③ 생활정도 확인 서류 * 5 ~ 6 page 참조

구분	제출 서류
공 통	㉠ 2020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학생 본인 / 부 / 모) 각각 1부. ※ <u>주민센터 방문</u> 하여 '전국단위'로 발급 요청해야 함 ※ 과세 사실 없어도 반드시 제출 ('과세사실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발급됨) ㉡ 2020년도(1월~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 모) 각각 1부. ※ 반드시 <u>2020. 1. 1. ~ 12. 31. 조회</u> 및 요청 후 발급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부 / 모) 각각 1부. ※ <u>조회조건 '전체'</u> 설정하여 조회한 후 발급

※ 기혼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서류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5. 접수 및 선발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① 접수기간 : 2021. 2. 8.(월) ~ 2021. 2. 16.(화) 23시 59분까지
- ②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우편·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③ 접수처: (접수 홈페이지) samdasoo.incruit.com
- ④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2021. 2. 25.(목)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개별통지
- ⑤ 차순위자 선발 결과 발표 : 2021. 3월초 (예정)

6. 기타 사항

- ① 접수 마감일까지 미비된 서류가 있을 시 접수 대상에서 제외
- ②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장학금 지급 중지
 -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선발취소, 장학금 환수조치)
 -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나 학적을 이탈하는 경우(제적, 자퇴, 편입학, 학기등록 전 휴학, 유학, 조기졸업 등) 당해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 선발된 자가 추후 품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재단 이사회에서 판단한 경우
 - 2021년도 1학기 성적이 신청요건 학업성적 기준에 미달한 경우 2021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이 취소됨
 - 2021년도 본 재단 장학생으로서 서약한 사항에 위배되었을 경우
- ③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지급
 - 등록금 중 일부를 타 장학금(국가, 교내 등)으로 수혜한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 지급 *등록금 전액 타 장학금 수혜한 경우 본 재단 장학금 지급 중지
- ※ 타 장학금 수혜 합계 금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각 학교 및 본 재단에서 환수조치
- ④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회공헌팀 (☎ 064-780-3406)으로 문의

붙임: 구비서류 발급 관련 세부 안내 1부. 끝.

구비서류 발급 관련 세부 안내

1. 주민등록초본(상세) 발급 (민원 24 또는 주민센터)

(링크)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II.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링크) <http://efamily.scourt.go.kr/pt/PtFrrpApplTrgtInq.do>

III.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민센터 방문 발급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국단위**’로 발급(학생 본인, 부, 모) 요청

(예시) 지방세를 제주시 지역에만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전국단위로 발급 요청 후 주민센터 서류 발급 담당자가 지방세 과세 사실이 없는 지역(서귀포시, 타 도·시)도 발급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경우, 모두 발급한다고 답변하면 됨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해당지사 방문 (발급 가능시간: 평일 9시 ~ 18시)

※ 대리발급 시 위임장 및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각각 지참

* 위임장 서식: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illegible][illegible][illegible]

과세지역 (제주시)

과세지역 (서귀포시)

과세지역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

